『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

1. 지원 필수조건
2. 지원신청서류 작성
3. 재원조성 및 예산계획 작성

Ⅰ 지원 필수조건

<table>
<tr><th colspan="2">지원 필수조건
※ 모든 필수조건 및 증빙서류 불충족시 심의대상에 제외될 수 있음</th></tr>
<tr><td>지원대상</td><td>•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공·민간의 전시단체 및 전시기획사
• e나라도움 운용이 가능한 단체(예치형으로 사업비 운영/정산/검증 필수)</td></tr>
<tr><td>지원전시</td><td>
<table>
<tr><th>지원조건</th><th>증빙서류</th></tr>
<tr><td>• 최근 3년(23년 1월~25년 11월)내 유료로 개최 이력이 있는 전시</td><td>➤ 지원하려는 전시의 유료티켓가격과 전시기간이 명시된 홍보물 제출</td></tr>
<tr><td>• 신청주체(단체)가 최근 3년(23년 1월~25년 11월)내 주최·주관·기획한 이력이 있는 전시</td><td>➤ 신청주체명이 주최·주관·기획으로 명시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링크 등) 제출</td></tr>
<tr><td>• 최근 3년(23년 1월~25년 11월)내 유료 관람객수 5,000명 이상 실적 증빙이 가능한 전시</td><td>➤ 티켓 정산서 등 객관적 판매내역 제출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필수</td></tr>
<tr><td>• 시각예술(미술) 전시(작가/작품 제한 없음)</td><td rowspan="6">➤ 증빙 불필요
(공모지원신청서 내 해당조건을 충족하여 작성 후 제출)</td></tr>
<tr><td>• 유료 전시(금액제한 없음)</td></tr>
<tr><td>• 전시기간 26년 3월 3주~11월 4주 내 설정
• 전시일수 연속 50일 이상 유지(설치,철수,휴관일 제외)</td></tr>
<tr><td>• 전시해설프로그램 오프라인 기준 20회 이상 운영</td></tr>
<tr><td>• 관람객만족도조사 300부이상 제출</td></tr>
<tr><td>• 총괄기획자 선임</td></tr>
</table>
</td></tr>
<tr><td>전시공간</td><td>• 실내 전시전용면적 250평(약 826.44㎡) 이상의 전시공간(야외 미포함)
•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전시전용공간
• 기개최했던 전시공간에서 재개최 불가
• 식음료시설, 로비, 복도 등 상업시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경우 불가
• 1개의 공간에 타 용도와 혼용되는 경우 불가
※ 공모 지원시 전시공간과 실제 전시공간이 상이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td></tr>
<tr><td>예산편성</td><td>• 국고보조금은 3억 원 ~ 5억 원 내에서 자유 편성 가능
• 총 국고보조금의 10%를 현금성 자부담으로 편성/지출 필수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하며,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사업비로 편성/지출 불가
<table>
<tr><th>세목</th><th>지원항목(국고보조금/자부담금)</th><th>유의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수용비(01)</td><td>• 참여작가 사례비(Artist's fee)</td><td>- 지원단체 소속인력(대표자포함) 책정 불가</td></tr>
<tr><td>• 총괄기획자 사례비</td><td>- 외부 인력에 한해 책정 가능(내부 총괄기획자는 사례비 책정 불가)
- 국고보조금의 2.0% 초과 책정 불가
- 총괄기획자 외 큐레이터 등 책정 불가</td></tr>
<tr><td>• 외부 전문가 사례비</td><td>- 지원단체 소속인력(대표자포함) 책정 불가</td></tr>
<tr><td>• 재료비</td><td>- 부가세는 사업비 외 순수자부담으로 지출 필수</td></tr>
<tr><td>공공요금(02)</td><td>• 보험료</td><td rowspan="7">- 1개 대행업체와 다수 계약 불가
- 1개 대행업체와 공급가 기준 2천만원 초과 계약 불가
- 인적용역 계약 불가
- 계약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부가세는 사업비 외 순수자부담으로 지출 필수</td></tr>
<tr><td>임차료(07)</td><td>• 임차료</td></tr>
<tr><td rowspan="5">일반용역비(14)</td><td>• 공간연출(설치/철수) 대행용역비</td></tr>
<tr><td>• 작품운송 대행용역비</td></tr>
<tr><td>• 전시장지킴이 인력대행 용역비</td></tr>
<tr><td>• 전시 홍보/광고 대행용역비</td></tr>
<tr><td>• 기타 전시운영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시 지출 가능</td></tr>
</table>
</td></tr>
</table>

Ⅱ 지원신청서류 작성

□ 필수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여부	제출서류	제출형식
1	필수	•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제출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PDF
3	필수	• 서식1 공모지원신청서	HWP
4	필수	• 서식2 신청사업 기개최 증빙서	PDF
5	필수	• 서식3 신청사업 참여작품 리스트	PDF
6	필수	• 서식4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PDF
7	필수	• 서식5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PDF
8	필수	• 서식6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PDF
9	필수	•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10	필수	• 서식8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	PDF
11	선택	• 공간협약서(제출시 전시공간 날인 필수) - 별도 양식 없음	PDF
12	선택	• 후원/협력 증빙서(제출시 후원/협력기관 날인 필수) - 별도 양식 없음	PDF
(참고) 별도제출		• 면접심의 발표자료 ※서류심의 결과공고 후 면접 대상자에 한해 제출안내 예정	-

□ [서식] 작성가이드

○ **(양식)** 제공 서식은 임의로 변형/삭제 불가하며, 일부 항목에 한해 양식표 추가 가능

○ **(작성)** 본문은 휴먼고딕 10pt, 행간 160% 기준으로 작성

○ **(체크박스)** [서식1]공모지원신청서 내 체크박스 누락시 신청서 미작성으로 간주

○ **(제출형식)** 서식별 '제출형식'을 준용하여 e나라도움 제출

○ **(제출용량)** 서식별 최대 20페이지까지 작성 가능, e나라도움 제출파일 용량 제한 50MB 준수

○ **(제출서류)** 제출파일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서명 불가)

- 선택제출 파일(11번, 12번)은 협력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유효(서명불가)

□ 작성 유의사항

- ㅇ 작성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개인정보 제외)
- ㅇ 사업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음
- ㅇ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시스템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2~3일 전)에 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고함, 제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주체에게 있음
- ㅇ e나라도움에 제출된 서류는 공고 종료 후 수정 및 반환 불가
- ㅇ 수치 작성 시 이상·이하 등의 추정치 작성 불가

  예시) 약 5,000명(X), 오천명 이상(X), 5,000명(O)
- ㅇ 행정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제출서류 누락, 지원조건 불충족, 증빙 불충족, 날인 누락, 신청서 미작성, 작성내용 미흡 등
- ㅇ 신청주체는 사업 신청·운영 간 사업체 유지 필수, 휴·폐업 시 지원 취소
- ㅇ 추후 지원 심의에서 보조금 배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ㅇ 공모 신청내용이 실제 운영과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ㅇ 기개최 전시내용과 공모신청서의 사업내용은 80%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어야하며, 20% 내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ㅇ 신청내용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초상권·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II 재원조성 및 예산계획 작성

사업자유형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증
기본원칙		사후 환급/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능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
처리 방법	(A) 신 청	공급가액으로만 사업예산 계획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모두 공급가액)	부가세액 포함하여 사업예산 계획

		⬇	⬇
	(B) 집행	부가가치세에 한해 순수 자비로 처리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일괄 집행
		⬇	⬇
	(C) 정산	부가세 포함한 집행증빙자료 제출 (자비로 처리한 부가세 내역이 보이는 이체확인증도 함께 송부)	부가세 포함한 집행증빙자료 제출

□ 용어 정의

- ㅇ 사업비 : 국고보조금(예술경영지원센터)과 자부담금(신청주체)의 합산액
- ㅇ 국고보조금 : 문체부가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를 공모사업에 재교부하는 금액
- ㅇ 자부담금 : 신청주체가 부담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사용하는 금액
- ㅇ 순수 자부담금 : 사업비 외 사업에 운용되는 기타 부담액(부가가치세 등)

□ 작성 유의사항

- ㅇ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전·사후 사용은 불인정함
- ㅇ 자부담금은 정률 책정하며, 추후 감액 집행할 경우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ㅇ 자부담금은 1차 교부 후, 2차 교부 전 전액 소진하여야하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출 정산 검토를 완료하여야 함
- ㅇ 신청주체가 일반과세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순수 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 편성은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작성
- ㅇ 신청주체가 일반과세이나 부가세 불공제 사업장으로 사업비 편성에 부가세 포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공제명세서 등의 적격증빙서 제출 필수
- ㅇ 예산편성은 반드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편성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함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경쟁성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조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체결 시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예산 기준표

<table>
<tr><th>목</th><th>세목</th><th>지급유형 및 단가</th></tr>
<tr><td rowspan="3">운영비</td><td rowspan="3">일반 수용비</td><td>

● **참여작가 사례비**
-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지역전시 사업에 참여한 작가의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
- 산출은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상호 협의(신청주체-작가)하여 결정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례비 지급 시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 신청주체의 소속인력(대표자포함)은 작가로 참여하더라도 비용 지급 불가
※ 산출액은 원천징수액 포함

</td></tr>
<tr><td>

● **총괄기획자사례비**
- 외부기획자에 한정하여 편성 가능
- 2025년 학술연구용역 기준에 근거하여 책정

<table>
<tr><th>등급</th><th>기준</th><th>월 임금기준 (투입률 50%)</th></tr>
<tr><td>책임연구원</td><td>-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td><td>3,705,904원</td></tr>
<tr><td>연구원</td><td>-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td><td>2,841,638원</td></tr>
</table>

※ 국고보조금의 2.0% 이내 책정
※ 총괄기획자 외 큐레이터, 디자이너 등 인력비 책정 불가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례비 지급 시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 신청주체의 소속인력(대표자포함)에게 비용 지급 불가
※ 산출액은 원천징수액 포함

</td></tr>
<tr><td>

● **외부 전문가 사례비**
- 강사, 학술행사의 발표·사회·토론자, 원고·편집자, 통·번역자
※ 신청주체의 소속인력(대표자포함)에게 비용 지급 불가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례비 지급 시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 산출액은 원천징수액 포함

[강사 사례비]
- 단가기준은 1시간으로 하며, 2시간은 1시간 기준의 2배로 책정
- 2시간 초과 시에는 매 시간마다 1시간 단가의 50%를 가산하여 책정
- 동일인이 2일에 걸쳐 강의할 경우 각일로 책정

</td></tr>
</table>

목	세목	지급유형 및 단가

등급	기준	기준단가(1시간)
A급	- 전/현직 장/차관급, 대학총장/학장급 - 일간지/방송국 논설위원, 국장급 - 전문직 종사자로 A급 예우 필요 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250,000원
B급	- 대학 전임강사/전문대 조교수 - 기업/기관 등 책임급 연구원 - 정부출연기관/문화예술 사단/재단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소장) - 정부부처 사무관/지방행정기관 국장급 - 전문직 종사자 중 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5년 이상 경력 초청강사	15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강사	100,000원

[학술행사 사례비]

- 단가기준은 3시간으로 하며, 3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0만원씩 가산 책정
- 동일인이 2일에 걸쳐 강의할 경우 각일로 책정

구분	기준(강사 사례비 기준과 동일)	기준단가(3시간)
발표자	A급	500,000원
	B급	400,000원
	C급	300,000원
사회자	A급	400,000원
	B급	300,000원
	C급	250,000원
토론자	A급	300,000원
	B급	250,000원
	C급	200,000원

[원고 및 편집 사례비]

- 기준1과 기준2 중 1개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
- A4 용지 기준 평균 글자수 1,500여자로 A4 1매당 원고지 8매를 적용하여 책정

기준1	기준2	기준단가(200자 원고지 1매)
- 해당분야 권위자 / - A급 외부인사	- 특별원고(비평, 창작물 등)	25,000원
- 전문작가 / - 해당분야 전문가	- 고급원고(연재물, 전문가글 등)	20,000원
- 전문작가 수준 / - 해당분야 경험자	- 일반원고(난이도 중)	15,000원
- 일반인 등	- 자료원고(리서치, 발췌 등)	5,000원

[통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요율표에 따라 책정
- (링크) http://hufscit.com/hufscit/index.do

● **재료비(부대행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부대행사 진행시 재료비
- 사업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및 완제품 구입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료** - 전시장, 작품 등에 대한 보험료

목	세목	지급유형 및 단가
	임차료	● **대관료** - 전시공간 대관료 ※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전시공간 활용 시 대관료 편성 불가
		● **임차료** - 전시에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임차료 편성 불가
	일반 용역비	● **공간 연출(설치/철수) 대행용역비**
		● **작품 운송(반입·반출) 대행용역비**
		● **전시장지킴이 인력대행 용역비**
		● **전시 홍보, 광고 등 대행용역비**
		● **기타 전시 운영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시 지출 가능

사업비 지원 불가항목	
선정단체/기업 경상비	• 소속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온라인 시스템 운영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포함) 등
자본적 경비	•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 및 제작 등
업무추진비	• 간담회, 업무회의 등을 위한 식음료비, 업추비 등
여비	• 전시를 위한 교통, 숙박, 유류대 등
전시 준비비	• 전시 준비를 위한 장소답사, 자문, 회의비 등
기타	• 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